

[별표 1] <개정 2016. 8. 31.>

징계기준(제2조제1항 관련)

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	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 가 있는 경우	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 실이거나,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 가 있는 경우	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,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 인 경우	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 실인 경우
<p>1. 성실의무 위반</p> <p>가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9조 의2제1항제2호의 비위¹⁾</p> <p>나.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</p> <p>다. 부작위²⁾· 직무태만(라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)</p> <p>또는 회계질서 문란</p> <p>라. 소극행정³⁾</p> <p>마.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⁴⁾의 신고·고발의무 불이행</p> <p>바.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 한 규정」 제6조의2, 제10조, 제11조, 제11조의2 및 제15 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등을 거짓이나 부 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사. 기타</p>	<p>파면</p> <p>파면</p> <p>파면</p> <p>파면</p> <p>파면~해임</p> <p>파면~해임</p> <p>파면~해임</p> <p>파면~해임</p>	<p>파면~해임</p> <p>해임</p> <p>해임</p> <p>파면~해임</p> <p>강등~정직</p> <p>강등~정직</p> <p>강등~정직</p> <p>강등~정직</p> <p>강등~정직</p>	<p>해임~강등</p> <p>강등~정직</p> <p>강등~정직</p> <p>강등~정직</p> <p>정직~감봉</p> <p>정직~감봉</p> <p>정직~감봉</p> <p>감봉</p>	<p>정직~감봉</p> <p>감봉</p> <p>감봉~견책</p> <p>감봉~견책</p> <p>감봉~견책</p> <p>감봉~견책</p> <p>견책</p>
<p>2. 복종의무 위반</p> <p>가.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 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</p> <p>나. 기타</p>	<p>파면</p> <p>파면~해임</p>	<p>해임</p> <p>강등~정직</p>	<p>강등~정직</p> <p>감봉</p>	<p>감봉~견책</p> <p>견책</p>
<p>3. 직장 이탈 금지 위반</p> <p>가.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</p> <p>나. 무단결근</p> <p>다. 기타</p>	<p>파면</p> <p>파면</p> <p>파면~해임</p>	<p>해임</p> <p>해임~강등</p> <p>강등~정직</p>	<p>강등~정직</p> <p>정직~감봉</p> <p>감봉</p>	<p>감봉~견책</p> <p>견책</p> <p>견책</p>
<p>4. 친절·공정의무 위반</p>	<p>파면~해임</p>	<p>강등~정직</p>	<p>감봉</p>	<p>견책</p>

5.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. 비밀의 누설·유출 나.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 유출 다.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. 개인정보 무단조회·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.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	파면	파면~해임	강등~정직	감봉~견책
	파면~해임	해임~강등	정직	감봉~견책
	파면~해임	강등~정직	정직~감봉	감봉~견책
	파면~해임	강등~정직	감봉	견책
6. 청렴의무 위반	[별표 2]와 같음			
	[별표 3]과 같음			
7.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. 성폭력(업무상 위력 등 ⁵⁾ , 미성년자·장애인 대상) 나. 그 밖의 성폭력 다. 성희롱 ⁶⁾ 라. 성매매 ⁷⁾ 마. 음주운전 바. 기타	파면	파면~해임	해임~강등	강등~정직
	파면	파면~해임	강등~정직	감봉~견책
	파면	파면~해임	강등~감봉	감봉~견책
	파면~해임	해임~강등	정직~감봉	견책
	[별표 3]과 같음			
	파면~해임	강등~정직	감봉	견책
8.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	파면~해임	강등~정직	감봉	견책
9. 정치운동 금지 위반	파면	해임	강등~정직	감봉~견책
10. 집단행위 금지 위반	파면	해임	강등~정직	감봉~견책

※ 비고

- 제1호가목의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(임용권자)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 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.
- 제1호다목에서 "부작위"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.
- 제1호라목에서 "소극행정"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.
- 제1호마목에서 "주요 부패행위"란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징계시효가 5년인 비위를 말한다.
- 제7호가목에서 "업무상 위력 등"이란 업무·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·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.

- 6) 제7호다목에서 "성희롱"이란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.
- 7) 제7호라목에서 "성매매"란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.